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이 개정(법률 제17976호, 2021.3.23. 공포. 2021.9.24. 시행)되면서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, 시외버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에 시외고급고속버스 및 시외고급직행버스를 추가하고자 함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4. 15. ~ 5. 1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4조의2 및 제9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1 제1호가목 중 “제8조제3항제1호”를 “제8조제4항제1호”로 하고, 같은 란 나목 중 “제8조제3항제4호”를 “제8조제4항제4호”로 하며,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“제8조제5항제1호”를 “제8조제6항제1호”로 하고, 같은 란 나목 중 “제8조제5항제1호”를 “제8조제6항제1호”로 하며, 같은 란 다목 중 “제8조제5항제2호”를 “제8조제6항제2호”로 하고, 같은 란 라목 중 “제8조제5항제2호”를 “제8조제6항제2호”로 하며, 같은 란 마목 중 “제8조제5항제3호”를 “제8조제6항제3호”로 하고, 같은 란 바목 중 “제8조제5항제3호”를 “제8조제6항제3호”로 하며, 같은 란에 아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아. 시외고속직행버스: 제8조제6항제2호에 따른 직행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2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

사. 시외고속고속버스: 제8조제6항제1호에 따른 고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2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

별지 제50호서식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호
검 사 공 무 원 증
(유효기간: . . .까지)
사 진 3cm×4cm (탈모,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)
성 명
국토교통부 시·도지사 시장·군수

60mm × 90mm (보존용지1종120g/㎡)

별지 제50호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(뒤 쪽)

검사공무원증
직위/직급:
성 명 :
생년월일 :
위의 사람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임을 증 명합니다.
년 월 일
국토교통부장관 시·도지사 시장·군수
적인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제94조의2(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) 법 제51조의2제5호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</u> <u>1. 제31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</u> <u>2.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5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</u> <u>3. 법 제5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지급기준에 위반된 경우</u>	<u><삭 제></u>
<u>제94조의3(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) 법 제51조의3제5호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</u> <u>1. 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</u>	<u><삭 제></u>

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
대수나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
한 경우

2. 법 제50조제5항 후단에 따른
지급기준에 위반된 경우